#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

2025년도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. 1. 31.

# 서울특별시장

1. 융자지원 규모 : 총 15억원

# 2. 융자대상 및 조건

○ 융자대상 : 서울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·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 허가(신고.등록)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

#### ○ 융자 및 상환조건

융자종류	대 상	한도액	이율	상환조건
	일반, 휴게, 제과점, 위탁급식영업	1억원	연 2%	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
시설개선 자금	식품제조·가공업	8억원	연 2%	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
자금 	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(지정받은) 업소	3천만원	연 1%	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
	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	2천만원	연 1%	2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

※ 식품접객업소 : 일반, 휴게, 제과점, 위탁급식영업

### ○ 사용용도

융자종류	사용용도
시설개선 자금	- 식품제조·가공업 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- HACCP 도입 준비를 위한 기기·설비 설치비용 - 영업장 수리, 개조, 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위생장비 구입 -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 개선  ※ 시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% 이내로 함
	<ul><li>▶ 적합한 경우:위생관리시설 개선공사, 설치가 필요한 대형냉장고 등의 주방기기 구입</li><li>▶ 부적합한 경우:식가·조라용품 등 단순 소모성 주방용품 구입, 신규 개업(장소이전) 인테라어 등</li></ul>

#### 3. 제외대상

- 휴/폐업 중인 업소
- 단란주점, 유흥주점
-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「식품위생법」을 위반하여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
-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상환 중인 자 및 상환 후 1년 미만인 자
- 동일인에 대한 중복융자(업소 수와 무관)
- 공동영업자로 등록된 영업자의 경우, 영업자 중 1인만 지원
- 신규 영업허가·등록·신고(영업자 지위·승계 포함) 후 1년 미 경과 업소 (단, 천재지변 등에 의한 시설물 개·보수 시 융자 가능)
- 4. 융자 취급은행: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IBK기업은행 각 영업점
- 5. 융자신청 :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
  - 신청기간 : 연중(자금 소진 시까지)
  - 구비서류
    - 공 통 : 신분증(본인확인용), 융자신청서, 사업이행확약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영업신고증 사본, 영업시설 개선 사업계획서, 세부 견적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
    - 추가서류(해당시)
      -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파매업소 :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
      - 법인 :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인감도장, 대표자신분증
    - ※ 서식은 자치구 위생(관련)과나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누리집(https://fsi.seoul.go.kr/)에 비치되어 있음

# 6. 융자방법 :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 및 신용대출

- 서울신용보증재단 식품진흥기금 특별보증 가능
  -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체 특별보증 우대사항
    - 우 대 한 도 : 일반융자추천 30백만원

※ 융자추천별 우대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제규정에 따라 한도심사

- 심 사 우 대 : 우대한도까지 별도 심사 없이 한도 내에서 지원
- 보증료우대 : 연1.0%
-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더라도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

#### 7. 유의사항: 융자 받은 후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시 즉시 전액 상환

- 융자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융자 받은 업소가 폐업. 영업소 폐쇄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
- 단란주점. 유흥주점 업소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
-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
- 대출 당시의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경우(단, 식품 제조·가공업소 제외)
-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지정 취소된 경우
-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융자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휴업한 경우로서 그 휴업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
- 8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(☎120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